

인천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나51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3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소642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9,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은 2019. 9. 11. ‘E’를 방문하여, 피고 C의 소개를 통하여, F의 이름으로 중고자동차인 ‘코란도 스포츠’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F은 피고 C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이전등록을 위한 취득세, 매도비(매매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할부 상환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이 ‘E’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이 11,900,000원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F은 위 가격에 예상 취득세와 매도비를 합한 금액에서 할인을 받아 총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알아보니 실제로 그 적정 가격은 8,5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차량의 출고가격, 모델의 단종 여부 등에 대하여 원고와 F을 기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과 ‘E’의 대표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액 2,789,550원(위 12,0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적정 가격 8,500,000원 - 이전등록을 위한 실제 취득세 413,450원 - 매도비 297,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합계 5,78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을 부풀렸다거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차량의 출고가격, 모델의 단종 여부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현선헤, 판사 백규재